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완료 후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료 납부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사례 항소심 판결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관기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영리기업 참여기관에 대해 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를 요구하자, 참여기관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산단에서 실시계약을 위해 제시한 기술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술실시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과 영리기업 참여기관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영리기업 참여기관에게는 여전히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1 심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영리기업 참여기관의 기술료 납부의무는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산축법과 시행령의 관계 규정, 협약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등 그 결과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협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의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이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의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기술실시계약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기술료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참여기관이 실시계약체결을

거절해도 여전히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반대 결론의 1심 판결이유와 반대편에 선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린 판단이므로 항소심 판결이 현행 법령, 하위 규정 및 협약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어떤 방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 공동관리규정 상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연도	관련규정	기술료 제도 일반	정부납부제도
200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1.12.19)	· (소유)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단,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이 소유 · (기술료)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정부출연금 이상을 실시 계약 체결 또는 매출액 발생 시점으로 5년 이내에 징수	· 주관기관 유형별로 출연금 상당액의 일정비율 납부 - 비영리: 30% 전문기관 납부 - 영리: 50% 전문기관 납부
200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5.3.8.)	· (소유) 상동 · (기술료)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 주관기관 유형별로 기술료 중 출연금 지분의 일정비율 납부 - 비영리: 20% 전문기관 납부 - 영리: 30% 전문기관 납부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8.12.31.)	· (소유)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이 소유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전문기관 납부분 없음. 단, 9% 과학기술인공제회 납부(대학 제외) - 영리: 출연금 지분의 30% 전문기관 납부
201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5.14.)	· (소유) 상동 · (기술료) 상동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상동 - 영리: 출연금의 ① 중소: 10% 전문기관 납부 ② 중견: 30% 전문기관 납부 ③ 대: 40% 전문기관 납부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20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4.8.12.)	· (소유) 기술개발기관(공동개발인 경우 공동소유) · (기술료) 상동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납부 - 비영리: 전문기관 납부분 없음 - 영리: 상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8.12.)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원칙 변경

- 무형적 성과물(특허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기관) 소유원칙'으로 전환
- 연구개발결과물 공동소유 증가에 따른 후속연구 및 사업화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 간 실시권(Access Right)을 인정

<신구조문 대비표>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3.9.26.)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4.8.12.)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2 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 다 8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 3 개의 세부과제 중 제 1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는 제 2,3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쟁점: 주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2.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개정 경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 통합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면제 + 2008. 12. 31.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 모두 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3. 대법원 판결요지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이자 제 1 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제 1 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술개발에 관여한 제 1 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 2,

3 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의 귀속과 관계없이 이 사건 총괄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책과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